|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**보도참고자료** | 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 |
|---|---|
| **배포 즉시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| 문의 :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장, 나한균 사무관(044-203-5228) | |

# 정부, 주유소업계 동맹휴업에 엄정 대처키로

□ 정부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 보고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, **'14.6.12일 동맹휴업을 실시**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**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함**

* 주유소협회는 '14.6.9 12:12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.12일 3,029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힘

□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금번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**명백한 불법적인 행위**로서, 정부는 **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**할 방침이며,

○ 주유소업계는 **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**하고,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

□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임

① 주유소사업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'에너지법'에 따라 **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**되도록 기여할 할 의무가 있으며,

② 주유소사업자는 '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'에 **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**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음

*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,500만원 과징금부과와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



③ **사업자단체는**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'에 따라 **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**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

* 위반시 5억원범위내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

④ 또한, 산업부(주무관청)는 민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협회가 '공익을 해하는 행위'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

□ 이에, 정부는 주유소협회와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**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계획**임

○ 이를 위해 '14.6.11부터 산업부와 지자체에 '소비자 신고센터*'를 설치하고, 지자체,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'석유수급 특별단속반'을 운영할 예정

* 산업부, 지자체(시·군·구) 및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안내

○ 또한, 산업부는 이번 동맹휴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주유소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

□ '14.7.1일부로 시행 예정인 **주유소 사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 변경(월간→주간)**은

○ 가짜석유 근절을 통해 불법석유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믿고 찾는 **건전한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**으로

○ 그 동안 제도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규제심사 등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**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고주기를 앞당기게 된 것**임

□ 정부는 정유사, 대리점, 주유소 등 **석유사업자들과의 지속적 협의와 철저한 사전준비를** 통해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단위 보고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며,

○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**석유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**할 방침이라고 밝히고

○ 주유소협회와 주유소사업자에 대해 국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불법 **동맹휴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음.** /끝/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나한균 사무관(☎ 044-203-522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참고1 주유소 동맹휴업 법률검토

□ **(주유소)** 석대법 제39조(행위의 금지)에 의거, 집단휴업에 참여한 주유소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

**<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>**

**제39조(행위의 금지)** ①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출입업자·**석유판매업자**·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**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**

4. **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·감축하거나 출고·판매를 제한하는 행위**

□ **(주유소협회)** 협회의 집단휴업 주도행위에 강제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(공정위 협조)

○ 또한,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인 주유소협회가 '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'할 수 있음

**<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>**

**제26조(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)**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3. **구성사업자(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**

**< 민법 >**

**제38조(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)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**

**< 주유소 동맹휴업시 처벌 내용 >**

| 관련 법 | 관련 조항 | 위반시 처벌(조치) 조항 |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| 제39조제1항 (행위의 금지) | 제13조 (행정처분) | 사업정지 1개월 |
| | | 제14조 (과징금) | 15백만원 |
| | | 제45조 (벌칙) |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|
| 공정거래법 | 제26조제1항 (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) | 제27조 (시정조치) | 당해 행위 중지,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함 |
| | | 제28조 (과징금) | 5억원 범위 내 과징금 부과 |
| | | 제67조 (벌칙) |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민법 | 제38조 (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) | 제38조 (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) |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|

## 참고2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 추진현황

### 1.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 제도란 ?

□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제도는 석유수급의 안정성과 석유유통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유사·수입사·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(입하·출하·재고)을 월 1회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도(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, '72년 도입)

□ '11.9·10월 가짜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·화재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

○ 가짜석유 불법유통 단속의 적시성·정확성 확보를 위해 기존 거래상황 보고를 월 수기보고에서 주간단위 수기 또는 전산보고토록 개정

### 2. 주간단위 보고제도의 필요성은 ?

□ 가짜석유는 폭발·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탈루 등 석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불법 제품

□ 정부는 가짜석유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비롯한 석유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단속 및 사후처벌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,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

□ 특히,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석유사업자의 거래상황 보고자료는 석유제품 소진주기(1주 이내)에 비해 보고주기(익월 25일)가 너무 길어 불법 석유유통 단속 정보로 활용 미흡

□ 따라서, 가짜석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석유사업자의 거래상황 보고주기를 단축하여 단속의 적시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, 소비자 보호, 탈세방지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임

### 3. 주간단위 보고제도의 시행 시기는 ?

□ 주간단위 보고제도 도입을 위한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을 '13.9.17일 개정·공포하였으며,

○ 변경 보고제도에 대한 정부와 석유사업자의 충분한 이행준비 및 적응 등을 위해 그 동안 준비작업을 진행중으로 오는 '14.7.1일부터 시행 예정

* 입법예고('12.6월) → 규제개혁위원회 심사('13.5월) → 개정·공포('13.9월) → 시행('14.7월)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